◈ D-25 임금유보·삭감·자택대기와 기준미달의 휴업 수당 지급승인제도반납

1.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%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. 다만, 평균임금의 70%이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을 할 수 있음.

2.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.

3.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이루어지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지급이 가능함. 건설회사의 경우 현장중단 또는 종료로 인한 보직대기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70%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많은바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이 미달하므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.

4.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제도, 순환근무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본인의 “무급휴직신청서”나 “순환근무제 실행에 따른 급여삭감동의서”에 서명날인 받은후에 시행하여야 한 “휴업수당지급문제”가 발생하지 않음.